

『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(가칭)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,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·육성
-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19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「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2호(가칭) 투자조합」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자개요

▪ 대상기관

대상기관명	(주)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	디랩벤처스(주)
대표이사	김철우	조윤희
소재지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3, 9층 (역산동, 예동빌딩)	경북 안동시 천년숲동로 10-13, 소유메트로 414호

- 출자예정액 : 금900,000천원 (1차년도)
- 출자근거
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

○ 사업개요

- 조 합 명 : 케이앤티 지방상생2호 투자조합(가칭)
 - 한국모태펀드 2019년 출자사업(지방기업) 신청('19. 2. 27.)
 - 결성근거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

* 한국모태펀드 : '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% 출자한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벤처투자(주)가 운용
(조성규모 3조4천억원)

- 운 용 사 : (주)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, 디랩벤처스(주)
- 출 자 자
 - 공동업무집행조합원 : (주)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, 디랩벤처스(주)
 - 유한책임조합원 : 경상북도, 구미시, 유관기관, 금융기관, 법인
 - 특 별 조 합 원 : 한국모태펀드

- 조합결성액 : 200억원

- 연도별투자계획

(단위:억원)

구 분	계	2019년	2020년	2021년
합계	200	60	80	60
국비(한국모태펀드)	110	33	44	33
구 미 시	30	9	12	9
경 북 도	20	6	8	6
유관기관, 금융기관, 법인	35	10.5	14	10.5
(주)케이앤투자파트너스	2.5	0.75	1	0.75
디랩벤처스(주)	2.5	0.75	1	0.75

- 존속기간 : 8년(투자4년, 회수4년) *출자금 납부 : 3년
- 투자대상 : 구미·경북권 일자리 창출 가능한 중소·벤처기업 등
- 운영방법 : 투자상담회 개최(연2회) 및 지원협의체 운영(연6회)
- 기대효과
 -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, 일자리창출,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

○ 출자의 필요성

-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기계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모바일 등의 기존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
-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, 「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0조
- 예산조치 : 2019년 1회 추경 예산편성(9억원)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(가칭)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」 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,
 -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